

수신자 인천광역시본부 광역관할 소재 50인미만 사업장(건설업 제외)

(경유)

제 목 인천광역시권 신규전략품목(초음파세척기, 화물차 후방카메라) 지원기준 변경 알림

1.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안전을 기원합니다.
2. 2022년 하반기 추가된 「2022년 고위험개선 신규 전략품목(6종)」 중 화물차 후방카메라 및 초음파세척기 품목의 변경된 보조지원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연번	품목명	지원기준	
		변경전	변경 후
1	초음파세척기	-	○ 초음파세척기 지원기준에 작업환경측정 기준 추가 - (측정 기 실시 사업장)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- (측정 미 실시 사업장)투자완료까지 작업환경측정 실시
2	화물차 후방카메라	어라운드뷰를 옵션으로 구분	○ 어라운드뷰 를 옵션이 아닌 제품으로 구분하여 승인 - 어라운드뷰 기능이 옵션이 아닌 어라운드뷰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제작되고 있어, 후방카메라 세트와 동등한 하나의 종류로 구분하여 승인
		“가격결정테이블+ 옵션(어라운드뷰)” 금액	○ 어라운드뷰 기준금액 산정방법 변경 - 온라인 조사 할증가격 또는, 실거래 금액을 적용

- 붙임 1. 초음파세척기 보조지원기준 1부.
2. 화물차 후방카메라 보조지원기준 1부. 끝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본부



과장

이혜진

차장

김영구

산업안전2부장

전결 10/17
한성주

협조자

시행 산업안전2부-3046 (2022. 10. 18.) 접수 ()

우 21417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 (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시본부) / <http://www.kosha.or.kr>

전화 032-5100-524 /전송 032-575-7287 / lhj1049@kosha.or.kr / 공개

대표번호 052)703-0500 1644-4544 <http://www.kosha.or.kr> /고객참여

o 공단 업무 관련 인권침해, 갑질, 금품수수, 부정청탁 등 신고(전화 052-2458-114, 공단홈페이지-민원-신고센터)